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14호 2022. 3. 8.(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26호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2-27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	4
남해군 고시 제2022-28호 당항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6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265호 공 고 문	8
남해군 공고 제2022-284호 소재불명자 공시송달 공고	11
남해군 공고 제2022-2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13
남해군 공고 제2022-297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20
남해군 공고 제2022-3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남해군 공고 제2022-3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남해군 공고 제2022-316호 2022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제도 시행 공고	34
남해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호 2022년 제1회 남해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46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26호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가. 위 치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366-6번지 일원
- 나. 사업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L=150m
- 다. 사업비 : 금3,000,000,000원(금삼십억원)
- 라.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12월
- 마. 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

2. 설계도서 열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3.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5.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비 고
사업내용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정비사업	
사업비(천원)	3,000,000	200,000	600,000	2,200,000	

6. 유지관리계획

가. 정비공사 완료 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등급을 조정하고 (필요시)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해제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로 안전 및 유지관리 만전을 기함.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명세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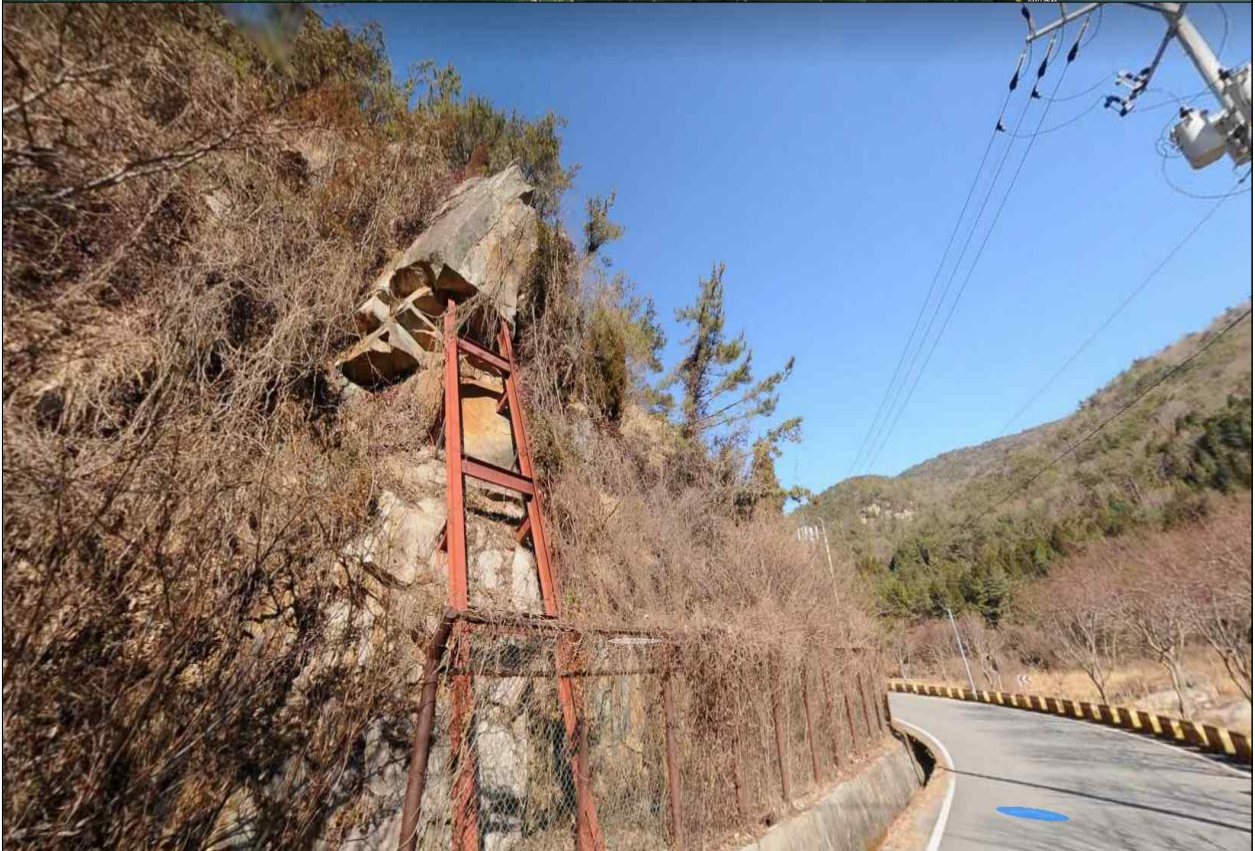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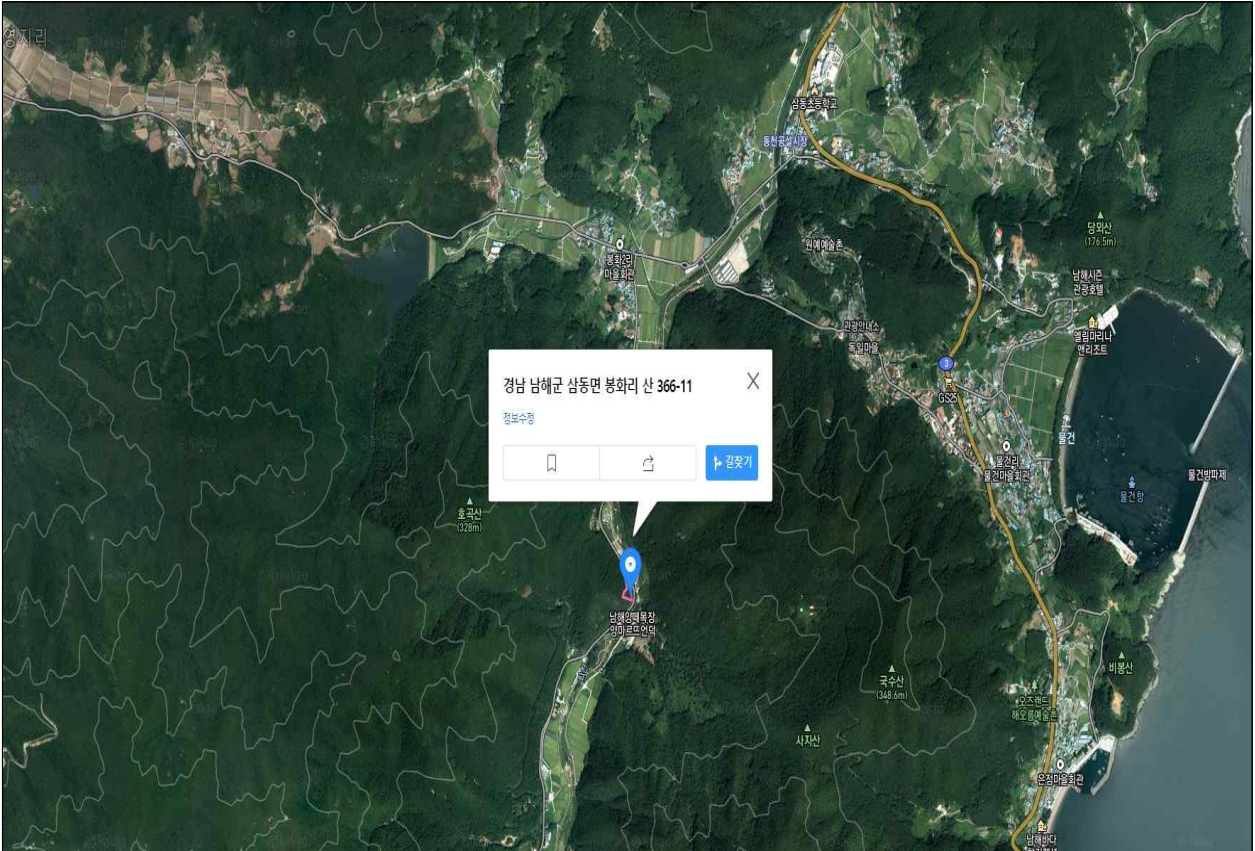
8. 기타사항 :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편입 토지 조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편입 토지 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1	삼동면 봉화리	산 366-6	산 366-11	임	16,643	2,461	1/1	김○준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51길 ○○	남해신용 협동조합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5	근저당권, 지상권	
2	삼동면 봉화리	1275-2	1275-2	도	53	53	1/1	신○섭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				

□ 위치도 및 전경사진



남해군 고시 제2022-27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단위단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남 해 군 수

1. 대상지역 : 남해군 하수처리구역 내

2.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m³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320,000원/m³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945,000원/m³

※ 다만, 타행위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원) = 1일오수발생량(m³)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m³·일))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2021.3.30.]」을 기초로 산정

5. 시 행 일

- 이 부과기준은 2022년 2월 23일 이후 부과부터 시행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6. 기타 문의사항 : 남해군 환경물관리단 하수도팀(055-860-3334)

남해군 고시 제2022-28호

당항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당항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당항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제당 및 여수토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영농에 기여

나. 위 치 :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717번지

다. 사 업 량 :

- 여수로복구(T=30cm) : 1개소, 여수로단면복구 : 235㎡
- 준설 : 1,971㎡, 호안블록붙이기(1.0×1.0×0.2) : 350㎡,
- 전석쌓기(0.3㎡급) : 193㎡, 테크교량(B1.5×L11.6) : 1개소
- 사통보강(2.0×6.0×0.4) : 1개소, 그라우팅(점토층, BX) : 525m,

라. 사 업 비 : 500백만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관 리 자 :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남 남해군 망운로 9번길 12

4.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22년 2월 25일 ~ 2022년 5월 25일

가. 관 리 자 : 남해군수

나. 주 소 : 경남 남해군 망운로 9번길 12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 해당없음

6. 위치도 및 계획도(붙임 1 참조)

7. 준공된 저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 : 남해군수

8.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열람

9. 기타문의 :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055-860-3303)

붙임 1. 위치도

2. 사업계획 평면도 1부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265호
(참조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제2022-4호)

공 고 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8. ~ 2022. 3. 4.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3. 사업소재지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일원
- 4. 공고사유 : 토지 소유자 거소 등 불명으로 인함
- 5. 협의사항
 - 가. 협의기관 및 방법 : 정당한 소유자는 권리보존(이전)등기 완료 및 등기부의 소유권

이외 권리(을구) 말소 후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손실보상금 청구서 제출

나.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협의에 응할 시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기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다.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2022. 03. 04(금)까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도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740-2615)로 문의.

6. 공고대상자 : 별지

손실보상금 산정조서(토지)

◆ 국토교통부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위법도로 개선공사

관리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취득일자		취득금액	취득금액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지번	취득지번		당초면적 (㎡)	평면면적 (㎡)		단가(원)	금액(원)		단가(원)	금액(원)		주소	성명		주소
1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신85-18	신85-30	임	10,353	20	1	14,000	280,000	280,000	14,000	280,000	동충부소공영사 동리구 명당동 142-4	한식			
2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신67-1	신67-25	임	3,155	242	1	14,000	3,388,000	3,388,000	14,000	3,388,000	동1노후자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489 동1노후자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526 송대포자 경남 남해군 이동면 송남로(가면안길 27)	이동민 이동민 이동민	신전리 489 신전리 526 신전리 27		
3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신167-1	신167-6	임	5,607	263	1	12,000	3,156,000	3,156,000	12,000	3,156,000	동부신 서해구 장전동 365 우림아파트 502 송정남 남해군 송정면 송부대로 799번길 78	김영			
4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신167-1	신167-5	임	5,607	77	1	14,000	1,076,000	1,000,000	13,500	1,039,500	동부신 서해구 장전동 365 우림아파트 502 송정남 남해군 송정면 송부대로 799번길 78	김영			
토지합계								24,722	602	7,902,000	7,825,000	7,825,000	7,863,500				

남해군 공고 제2022-284호

소재불명자 공시송달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의 대상자들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농어촌도로(창선면204호) 개설공사
- 3. 사업소재지 :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 당저리 일원
- 4.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주소·거소 등 불명으로 인함
- 5. 협의사항
 - 가. 협의기관 및 방법 : 정당한 소유자는 권리보존(이전)등기 완료 및 등기부의 소유권 이외 권리(을구) 말소 후 남해군청(건설교통과)에 손실보상금 청구서 제출
 - 나.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협의에 응할 시에는 청구에 의거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 다.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2022. 3. 8.(화)까지 남해군청(건설교통과)

남 해 군 공 보

(12) 제 714 호

2022년 3월 8일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도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로 문의

6. 공고기간 : 2022. 2. 22. ~ 3. 8. (14일간)

7. 대상자 및 토지 등의 표시

(단위 : m², 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보상액	비고
						성 명	주 소		
1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69-1	도로	70	70	김*웅	부산시 남구 망미동 419-23	3,535,000	

남해군 공고 제2022-2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지방도 1024호(영지~시문) 선형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남 해 군 수

1. 도로의 명칭 : 지방도 1024호선
(사업명 : 지방도 1024호(영지~시문) 선형개선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2. 6. ~ 2024.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명)	사업 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지방도1024호(영지~시문) 선형개선사업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0.68km ◦ 폭원 : 17.5m ~ 22.0m ◦ 면적 : 25,571㎡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방도1024호(영지~시문) 선형개선사업 시행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열람 장소 비치

5.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과,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삼동면사무소
- 열람기간 : 2022. 2.25 ~ 2022.3.11. (14일간)

6.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2.25. ~ 2022.3.11.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과(☎055-211-2975),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97,291	25,571						
1	삼동면 영지리	2272	도	517	517	경상남도	도유지				
2	삼동면 영지리	2203 -4	도	20	20	경상남도	도유지				
3	삼동면 영지리	2204 -2	도	149	4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4	삼동면 영지리	2204 -4	도	16	16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5	삼동면 영지리	2204 -8	도	69	45	경상남도	도유지				
6	삼동면 영지리	2202 -3	도	5	5	이O수	2524				
7	삼동면 영지리	2201 -2	도	350	35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	삼동면 영지리	2201 -3	도	7	7	경상남도	도유지				
9	삼동면 영지리	2203 -6	도	141	141	경상남도	도유지				
10	삼동면 영지리	2241 -2	답	229	145	경상남도	도유지				
11	삼동면 영지리	2241	창	363	3	심O숙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진해새마을금고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130	근저당권	
12	삼동면 영지리	2240 -1	답	105	105	경상남도	도유지				
13	삼동면 영지리	2203 -1	도	63	6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4	삼동면 영지리	2240	답	1,202	236	이O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이O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	삼동면 영지리	3114	도	99	9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6	삼동면 영지리	2211 -2	도	284	28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7	삼동면 영지리	2239	답	1,048	185	이O희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8	삼동면 영지리	3108 -3	도	823	41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9	삼동면 영지리	2213 -3	도	23	23	경상남도	도유지				
20	삼동면 영지리	2213 -1	도	7	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1	삼동면 영지리	2238	답	1,210	223	이O희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2	삼동면 영지리	2214 -1	도	22	22	경상남도	도유지				
23	삼동면 영지리	3115	도	188	18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4	삼동면 영지리	2237	답	726	132	서O순	2675				
25	삼동면 영지리	2215 -3	도	85	85	경상남도	도유지				
26	삼동면 영지리	2215 -1	도	40	4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7	삼동면 영지리	2236	답	611	111	박O환	1076				
28	삼동면 영지리	2217 -1	도	50	5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남 해 군 공 보

(16) 제 714 호

2022년 3월 8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9	삼동면 영지리	2217 -3	도	67	67	경상남도	도유지					
30	삼동면 영지리	1525	도	1,565	46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31	삼동면 영지리	2217 -4	도	36	36	경상남도	도유지					
32	삼동면 영지리	2248 -1	구	16,502	1,359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33	삼동면 영지리	1524	답	816	214	최O재	경기도 의왕시 삼동					
34	삼동면 영지리	1519	답	431	111	최O재	경기도 의왕시 삼동					
35	삼동면 영지리	1518	답	805	199	최O옥	경남 남해군 상주면					
36	삼동면 영지리	1515	답	849	210	최O옥	경남 남해군 상주면					
37	삼동면 영지리	1514	답	1,322	316	최O옥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38	삼동면 영지리	1503	도	2,711	2,266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39	삼동면 영지리	1513	답	531	118	박O춘	경남 창원시 진해구					
40	삼동면 영지리	1512	답	1,063	224	이O원	2177-3					
41	삼동면 영지리	1511	답	937	168	이O원	2527	삼동 단위 농업협동조합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2527	근저당권		
42	삼동면 영지리	1510	답	2,054	262	이O원	2177-3					
43	삼동면 영지리	1509	답	2,215	156	최O명	경남 남해군 삼동면					
44	삼동면 영지리	1508	답	1,651	98	정O철	경남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45	삼동면 영지리	1507	답	389	23	김O근	2064					
46	삼동면 영지리	1506	답	515	31	최O옥	경남 김해시 활천로					
47	삼동면 영지리	1505	답	1,711	36	이O주	2197					
48	삼동면 영지리	1463	답	511	22	박O환	1076					
49	삼동면 영지리	1462	답	1,930	61	최O연	2183-3					
50	삼동면 영지리	1504	구	117	117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51	삼동면 영지리	1461	답	1,954	54	김O석	경남 양산시 양주로					
52	삼동면 영지리	1460	답	2,064	72	최O연	2861					
53	삼동면 영지리	1459	답	2,120	92	이O순	경남 통영시 사랑면 읍덕리					
54	삼동면 영지리	1458	답	1,568	81	함안O씨 남해중친회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55	삼동면 영지리	1457	답	684	42	김O만	1173-2					
56	삼동면 영지리	1456	답	2,303	144	이O순	부산시 북구 구포동					
57	삼동면 영지리	1455	답	2,373	139	한O심	1076					
58	삼동면 영지리	1454	답	2,531	121	서O태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동남해농업 협동조합	남해군 이동면 무리리932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동남해농업 협동조합	남해군 이동면 무리리932	지상권	
59	삼동면 영지리	1443	구	376	67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60	삼동면 영지리	1163 -16	전	66	48	함안O씨 남해종친회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61	삼동면 영지리	1163 -9	임	4,227	746	함안O씨 남해종친회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62	삼동면 영지리	1163 -8	대	90	90	남해군	군유지				
63	삼동면 영지리	1163 -7	전	1,068	111	함안O씨 남해종친회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64	삼동면 영지리	1160 -3	대	86	86	남해군	군유지				
65	삼동면 영지리	1160 -4	도	251	96	남해군	군유지				
66	삼동면 영지리	2309	구	1,589	22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67	삼동면 영지리	2199 -4	구	756	20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68	삼동면 영지리	2201 -8	도	36	36	경상남도	도유지				
69	삼동면 영지리	2199 -1	전	826	11	최O남	부산시 남구 광안동				
70	삼동면 영지리	2199 -2	도	690	275	남해군	군유지				
71	삼동면 영지리	2211 -1	잡	608	608	정O철	남해읍 북변리				
72	삼동면 영지리	2201 -6	전	23	23	최O도	-				
73	삼동면 영지리	2197 -5	구	462	462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74	삼동면 영지리	2211 -6	도	301	301	경상남도	도유지				
75	삼동면 영지리	산379	임	7,240	246	최O옥	2869				
76	삼동면 영지리	2211 -7	도	107	107	경상남도	도유지				
77	삼동면 영지리	2197 -3	전	609	609	최O삼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78	삼동면 영지리	2212 -2	도	89	89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79	삼동면 영지리	2212 -1	도	53	53	경상남도	도유지				
80	삼동면 영지리	2197 -4	도	475	475	경상남도	도유지				
81	삼동면 영지리	2197 -2	도	76	7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2	삼동면 영지리	2196	전	790	293	김O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83	삼동면 영지리	2195 -1	답	262	30	김O경	경기도 시흥시 점원대로				
84	삼동면 영지리	2195 -3	도	356	331	경상남도	도유지				
85	삼동면 영지리	2219 -2	도	7	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6	삼동면 영지리	2195 -2	도	26	2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7	삼동면 영지리	2219 -5	도	301	301	경상남도	도유지				
88	삼동면 영지리	2219 -4	도	103	103	경상남도	도유지				

남 해 군 공 보

(18) 제 714 호

2022년 3월 8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9	삼동면 영지리	2219 -1	도	3	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0	삼동면 영지리	3113	도	248	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1	삼동면 영지리	2220 -1	도	30	1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2	삼동면 영지리	2220 -4	도	108	21	경상남도	도유지				
93	삼동면 영지리	2220 -3	답	230	38	최O덕	2175-1				
94	삼동면 영지리	2220 -5	도	530	530	경상남도	도유지				
95	삼동면 영지리	2193 -4	도	222	222	경상남도	도유지				
96	삼동면 영지리	2227 -5	도	120	120	경상남도	도유지				
97	삼동면 영지리	2224 -1	도	42	42	경상남도	도유지				
98	삼동면 영지리	2227 -6	도	318	318	경상남도	도유지				
99	삼동면 영지리	2227 -8	도	13	13	경상남도	도유지				
100	삼동면 영지리	2228 -2	도	1,099	1,099	경상남도	도유지				
101	삼동면 영지리	2234 -3	도	394	394	경상남도	도유지				
102	삼동면 영지리	2234 -4	도	237	237	경상남도	도유지				
103	삼동면 영지리	2228 -1	도	7	7	경상남도	도유지				
104	삼동면 영지리	2235 -1	도	590	590	경상남도	도유지				
105	삼동면 영지리	2180 -6	도	137	137	경상남도	도유지				
106	삼동면 영지리	2180 -4	도	702	702	경상남도	도유지				
107	삼동면 영지리	2179 -3	도	273	273	경상남도	도유지				
108	삼동면 영지리	2179 -1	도	132	132	경상남도	도유지				
109	삼동면 영지리	2178 -1	도	266	266	경상남도	도유지				
110	삼동면 영지리	2179 -4	도	13	13	경상남도	도유지				
111	삼동면 영지리	992 -1	도	56	56	박O오	1076				
112	삼동면 영지리	1163 -15	도	2,582	2,582	경상남도	도유지				
113	삼동면 영지리	1168 -10	전	25	1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114	삼동면 영지리	1168 -17	도	2	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15	삼동면 영지리	1168 -9	전	68	20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116	삼동면 영지리	1168 -16	도	93	9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17	삼동면 영지리	1168 -5	전	508	41	최O월	1173-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8	삼동면 영지리	1168 -15	도	18	18	경상남도	도유지				
119	삼동면 영지리	1168 -3	대	113	30	최O월	1173-2				
120	삼동면 영지리	1168 -14	도	39	39	경상남도	도유지				
121	삼동면 영지리	1168 -11	도	43	4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22	삼동면 영지리	1191 -3	전	153	93	권O련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123	삼동면 영지리	1191 -4	도	78	78	경상남도	도유지				
124	삼동면 영지리	1168 -12	도	126	12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25	삼동면 영지리	1191 -2	도	976	23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26	삼동면 영지리	1168 -13	도	13	1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27	삼동면 영지리	1163 -3	임	331	331	남해군	군유지				
128	삼동면 영지리	1163 -1	도	30	30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129	삼동면 영지리	1192 -5	도	55	55	경상남도	도유지				
130	삼동면 영지리	1192 -4	도	11	11	경상남도	도유지				
131	삼동면 영지리	1198 -6	도	1,016	35	경상남도	도유지				
132	삼동면 영지리	3104 -11	도	515	7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남해군 공고 제2022-297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하였기에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남해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남 해 군 수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도로 구간		총연장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남해	농어촌 도로	창선 204 호선	창선면 지족리 100-1	창선면 당저리 490-3	L=1,290m (A=20,436㎡)	-	6.5	6.5	미개설도로 신설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 및 교통 흐름 개선

남해군관리계획(도로:소로3-53호선) 결정(변경) 조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53	6.5	국지 도로	1,263	창선면 지족리 100-1번지	창선면 당저리 490-3번지	일반 도로			농어촌도로 (창선204호선)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53호선	○ 노선신설 - B = 6.5m - L = 1,263m	○농어촌도로 창선204호선 개설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자 함

남해군계획시설(소로3-53호선)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당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3-53호선) 사업
 - 명칭 : 농어촌도로(창선204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20,436㎡
 - 규모 : B=6.5m, L=1,263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

남 해 군 공 보

(22) 제 714 호

2022년 3월 8일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100-1	도	144	144	남해군					
2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100-2	답	81	81	남해군					
3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5-5	답	175	175	국 (기획재정부)					
4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5-6	답	18	18	남해군					
5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6-1	답	758	758	남해군					
6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5-4	답	298	298	남해군					
7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4-1	답	302	302	남해군					
8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0-2	답	134	134	남해군					
9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0-1	도	50	50	남해군					
10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1-1	도	92	92	남해군					
11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52-1	답	32	32	남해군					
12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3-2	답	139	139	남해군					
13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3-1	도	120	120	남해군					
14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68-1	도	76	76	남해군					
15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68-2	답	109	109	남해군					
16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69-1	도	70	70	김철웅	부산시 남구 망미동 419-23				
17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69-2	답	35	35	남해군					
18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0-2	답	107	107	남해군					
19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0-1	도	65	65	남해군					
20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1-1	도	174	174	남해군					
21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1-3	답	115	115	남해군					
22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2-2	답	110	110	남해군					
23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2-1	도	69	69	남해군					
24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4-1	도	9	9	남해군					
25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4-2	답	108	108	남해군					
26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5-3	도	24	24	남해군					
27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9-1	도	93	93	남해군					
28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5-4	도	36	36	남해군					
29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7-1	도	57	12	남해군					
30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6-3	답	714	714	남해군					
31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4-8	답	66	66	남해군					
32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6-2	답	425	425	남해군					
33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6-3	답	21	21	남해군					
34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2-2	답	17	17	남해군					
35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6-1	답	178	178	남해군					

36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0-2	답	44	44	남해군						
37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4-9	답	149	149	남해군						
38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2-3	답	453	453	남해군						
39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7-3	답	170	170	남해군						
40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7-2	잡	20	20	남해군						
41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1-1	답	121	121	남해군						
42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8-4	답	61	61	남해군						
43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80-1	답	387	387	남해군						
44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87	구	1,758	150	남해군 <small>(농림축산식품부)</small>						
45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7-6	임	193	193	남해군						
46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7-4	임	150	150	남해군						
47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52-1	전	101	101	남해군						
48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53-1	답	142	142	남해군						
49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54-1	답	206	206	남해군						
50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6-6	답	596	596	남해군						
51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85	구	1,492	138	남해군 <small>(농림축산식품부)</small>						
52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5-3	답	487	487	남해군						
53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4-6	답	241	241	남해군						
54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4-4	답	195	195	남해군						
55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4-3	답	144	144	남해군						
56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4-5	답	55	55	남해군						
57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17-3	답	597	597	남해군						
58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산37-3	임	3	3	남해군						
59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16-2	전	512	512	남해군						
60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산37-4	임	6	6	남해군						
61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산37-5	임	262	262	남해군						
62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15-3	전	13	13	남해군						
63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14-3	전	267	267	남해군						
64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14-4	전	535	535	남해군						
65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11-1	전	212	212	남해군						
66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9-6	전	17	17	남해군						
67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9-4	전	329	329	남해군						
68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8-4	전	321	321	남해군						
69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7-1	전	322	322	남해군						

남 해 군 공 보

(24) 제 714 호

2022년 3월 8일

70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산41-25	임	33	33	남해군						
71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산41-26	임	19	19	남해군						
72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4-2	전	117	117	남해군						
73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4-3	전	1,707	1,707	남해군						
74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산41-27	임	1,245	1,245	남해군						
75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산41-28	임	262	262	남해군						
76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산41-29	임	243	243	남해군						
77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산41-30	임	204	204	홍영근	인천 남구 남주길 11번길 20(주안동)	기술보증기금	부산 남구 문현길 33 (문현동)	가압류		
78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1-5	전	168	168	남해군						
79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1-9	장	16	16	남해군						
80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1-8	전	280	280	남해군						
81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1-6	전	1,019	1,019	남해군						
82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1-4	답	71	71	남해군						
83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00-2	답	4	4	남해군						
84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99	전	261	261	남해군						
85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98-1	답	26	26	남해군						
86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92-1	전	587	587	남해군						
87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89-4	전	61	61	정미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3, 701동 1901호(구서동, 구서동롯데캐슬골드)					
88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91-5	전	28	28	정미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3, 701동 1901호(구서동, 구서동롯데캐슬골드)					
89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91-4	전	266	266	남해군						
90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89-3	전	344	344	남해군						
91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88-1	잡	32	32	남해군						
92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71-1	구	68	68	남해군						
93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90-5	잡	286	286	국기획재정부						
94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공유수면	공유수면		340							
95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90-3	도	667	129	국기획재정부						
96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6-7	답	24	24	남해군						
97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36-8	답	21	21	이준우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58-12	창선농업협동조합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220	설정계약		
계						23,641	20,436							

남해군 공고 제2022-3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수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2년 3월 7일까지 남해군수(참조 : 행정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 2) 팩스: 055-860-3737
- 3) 메일: suyeon1616@korea.kr
- 4) 직접방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후생팀(☎055-860-3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배” 를 “5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2. (생략)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 ----- ----- -----5배-----. 1.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 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엿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개정 2021. 6. 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2-3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제정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세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최대 분할 가능 횟수 수정(안 제12조 관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2년 3월 7일까지 남해군수(참조 : 행정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 2) 팩스: 055-860-3737
- 3) 메일: suyeon1616@korea.kr
- 4) 직접방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후생팀(☎055-860-3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1회” 를 “3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 특별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표 (생 략) 비 고 1.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르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사용은 불가하다. 2. ~ 3. (생 략)</p>	<p>[별표 4] 특별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 고 1. ----- -----, 3회에----- ----- -----. 2. ~ 3.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022. 1. 11.공포 2022. 1. 13.시행]」

제12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 휴가일수는 별표 3와 같다.

[별표 3] 특별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20일	
자녀군입영 휴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	영 제7조 및 제7조의10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재해구호휴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5일 이내	
포상휴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일 이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		

비 고

1.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르며, **3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사용은 불가하다.

남해군 공고 제2022-316호

2022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제도 시행 공고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2022년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남 해 군 수

I.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은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II.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어업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업계의 계원 포함)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

< “경영이양” 의 개념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2.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등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

□ 신청 제외 대상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 등”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급요건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일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

3. 지원단가 및 지급액 산정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 원 율 : 국고 100%

□ 지원단가 :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연간 최대 1,440만원까지)를 지급

-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는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는 60%를 지급하며, 2,400만원 초과는 1,44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 지원단가는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만 지원

- * ‘결산소득’ 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어촌계 결산보고서 상 ‘수입’ 을 말하며, 결산 보고서에서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수입’ 에 준하는 사항을 의미함
-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급액에서 10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 직불금 지급액 산출 예시**

· 최근 3년 평균 어촌계 결산보고서 상 ‘수입’이 10,000만원이고, 어촌계원이 10명인 경우, 어촌계원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은 1,000만원(=10,000만원/10명)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
어촌계 결산소득(A) (결산보고서 상 ‘수입’)	9,000만원	10,000만원	11,000만원	<u>10,000만원</u>
어촌계원수(B)	9명	10명	11명	<u>10명</u>
어촌계원 1인당 평균 결산소득(A/B)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u>1,000만원</u>

→ 지급액 기준 ‘200만원 초과 2,400만원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급비율 60%를 적용하여 연간 600만원(=1,000만원의 60%)의 직불금을 지급

□ **지급액 산정** : 지원단가 × 지급기간(연)

□ **행정비** : 직불금의 2% 내외로 배정

- *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관련 전산 등 보조인력 인건비, 행정서식 등 제작 및 구입, 관내출장여비 등 집행(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4.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지급방법** : 약정체결일로부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 시행규칙 [별표 1] 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지급 중지

□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5.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세부 환수절차

□ 환 수

-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약정기간 중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을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

위반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00%

- 다만, 사망으로 인해 약정을 해지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 직불금은 환수에서 제외

□ 세부 환수절차

-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약정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자가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

[별표 1]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제1항 관련)

연령	지급기간
만 65세	10년
만 66세	9년
만 67세	8년
만 68세	7년
만 69세	6년
만 70세	5년
만 71세	4년
만 72세	3년
만 73세	2년
만 74세	1년

비고

지급기간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붙임 1]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어촌계	어촌계명			
	소재지	시·군	읍·면·동	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신청일까지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를 말합니다) 사본 1부 2.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없음

작성방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 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어촌계” 란에는 신청인이 속한 해당 어촌계명과 어촌계 주소지를 적습니다.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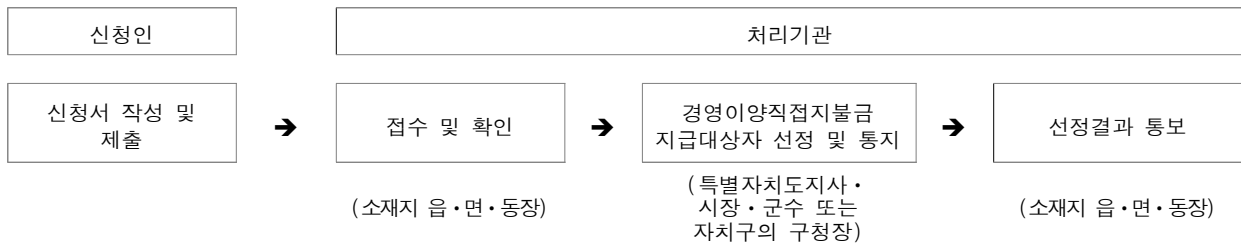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어촌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어촌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 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점검·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 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붙임]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 · 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촌계 정보: 어촌계 소재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 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부정 · 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 · 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촌계 정보: 어촌계 소재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 · 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경영이양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 · 이용합니다)

[붙임 2]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약정서(표준안)

(신규, 재약정)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등

-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경영이양 어촌계 :
- 직접지불금 지급액
 - 총지급액 : 금 원(W)
 - 월지급액 : 금 원(W)
- 직접지불금 지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월])

위 지급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에 있어 ○○시·군·구를 “갑” 이라 하고 을(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내 용

제1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갑” 은 위 지급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이 약정체결 후 “을” 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불금은 이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직불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직불금은 “을” 이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준수사항) “을” 은 이 약정 체결 전 계원 자격을 이양 완료하고 탈퇴한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3조(약정의 해제·해지) ① “갑” 과 “을” 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 은 “을” 에게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 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 이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경우
3. “을” 이 직불금 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② “을” 이 제1항에 따른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갑” 은 확인한 후 자체심의를 거쳐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제·해지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직불금의 반환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약정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을”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 이 정한 기한 내에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 은 약정을 해제하고 “을” 은 이미 수령한 직불금 총액과 매월 수령한 직불금에 대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 은 직불금 지급을 중지한다. 이 경우 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불금의 반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직불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의무) “을” 은 제1조에 따른 직불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의 변경
2. 제1조제3항에 따른 본인의 직불금 지급 예금계좌번호의 변동
3. 제2조의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6조(통지의 효력) ① “갑” 은 “을” 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 이 제5조제1호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 이 제1항에 따라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 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 이 “을” 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수산직불제법」, 「직불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약정내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갑”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약정 중도 해제 또는 해지자 등의 사후조치) “을”은 “갑”과 체결한 지급약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중도에 지급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동사업의 직불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확약한다.

제10조(출생연월일 정정) ①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며, 직불금 지급기간 종료시점을 재 산정하여 약정을 변경한다.

“을”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갑”

경상남도지사
남해군수 (인)

“을”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남해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호

2022년 제1회 남해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 제1회 남해군 일반임기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1일

남해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직 무 내 용
보건관리자 (재난안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사무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 연 령 : 만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결격사유>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보 건 관 리 자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조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 관련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보건관리자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채용분야 직무내용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div>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함.

4. 채용 조건

-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주당 35시간)
-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 보수수준

구 분	연봉액(천 원)		보 수	근무시간	비 고
	상한액	하한액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55,731	39,582	하한액	주당 35시간	

※ 연봉 의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개별 유선 통보)
 -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2. 3. 14.~ 2022. 3. 16.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2022. 3. 18.(예정)
면접 시험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2022. 3. 21.(예정)	2022. 3. 24.(예정)

- * 면접시행은 직무수행계획서 PPT 5분가량 발표 후 면접 실시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우편접수 시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사전연락 바람 (055-860-3113)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판매 /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 A4용지 2~3매 분량
4.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5매 이내 분량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필 기재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 (사본 가능)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9.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과 주소변동이력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
10. 최종학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
11.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가능
12.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한 자료만 유효 * 최종 합격자에 한함
13. 기타이력서 기재내용 증명할수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 (☎ 055-860-3113)
 - 업무관련 문의(보건관리자) : 남해군 재난안전과 중대재해TF팀 (☎ 055-860-3622)